

개포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3. 29. ~ 4. 1.(4일간)
-  감사범위 : 2014. 3. 18 ~ 2016. 3. 28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53건(주의 18, 시정 11, 현지시정 24)
 - 본 처분 29건(주의 18, 시정 11)
- 재정상 조치
 - 5건 1,559천원(세입1건 19천원, 여입1건 10천원, 회수3건 1,530천원)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구분	금액(원)
계	개포면	29 건	주의18 시정11	여입1/ 10,000 세입1/ 18,955 회수3/1,530,000	
1	총무담당	복무규정 미준수	주의		
2	"	신용카드 유지관리 미흡	시정		
3	"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	18,955
4	"	출납사무의 인계인수서 작성 지연	주의		
5	"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위반(증빙서류 미첨부)	주의		
6	"	관외 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7	"	관용차량 관리 미흡(차량정비대장 부분)	시정		
8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정리 미흡	주의		
9	"	청구금액이상으로 초과 지출	시정	여입	10,000
10	"	품의 없이 지출	주의		
11	"	품의금액 초과 지출	주의		
12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주의		
13	"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미비	주의		
14	"	옥외광고물 신고 민원서류 지연접수 처리	주의		
15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리 배수로설치공사)	시정	회수	920,000
16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리 배수로정비공사)	시정	회수	290,000
17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리 배수로정비공사)	시정	회수	320,000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구분	금액(원)
18	총무담당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소홀	주의		
19	"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부적정	시정		
20	"	농약빈병수거함 관리 부적정	시정		
21	주민복지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주의		
22	"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23	"	경로당 점검(안전) 및 지도 관리 소홀	주의		
24	민원담당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주의		
25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 소홀	시정		
26	"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부적정	주의		
27	산업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과다 징구	주의		
28	"	농지원부 변동사항 처리 소홀	시정		
29	"	농업인 학자금 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	주의		

주요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에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4. 3월부터 2015.11월까지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을 설정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미준수 하였음.

▶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 대장에 반드시 등재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은 등록 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 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화하지 않았음.

▶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화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년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2014년 12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8,955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음.

- ▶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8,955원을 세입조치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 및 예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사무담당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1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무관 변동시 인계인수서를 지연 작성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및 동 규칙 제67(개산급의 정산)에 의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 PP포대를 구입하면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는 국내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회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관외 출장 시 출장목적 달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후여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차량 관리방법) 및 제25조(기록 관리)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차량유지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호차 및 방제차량 운영관리에 필요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음.

▶ 관용차 차량정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출납원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동 조례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지방재정시스템 이해부족과 수납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이 불일치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면 ○○리 저수지옆 농로포장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소운반 임차비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액보다 10천원 초과하여 지출하였음.

▶ 초과 지출한 10천원을 여입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장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품의 없이 3,000천원을 지출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퇴직이장 재직기념패를 제작하면서 품의 금액 이상으로 초과 지출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6년 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세출예산과목 집행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새마을경제과-9471(2015.03.09.) 및 새마을경제과-9486(2015.03.09.) 관련하여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사업완료시 전·중·후 사진대지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나, 2015년도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완료 후 사진대지를 작성하지 않아, 결과보고 및 기록보존에 소홀히 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우동일의 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서류를 당일 접수 하지 않고 지연하여 익일에 접수 처리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4.03.07. △△△△(주) ●●●●와 계약한 ☆☆1리 배수로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역에 레미콘 타설에 대하여 직접타설로 계상 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펌프카로 타설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920,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92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4.03.25. ★★★★★(주) ♡♡♡♡와 계약한 □□리(▲▲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덤프트럭 적재시간(t1) 10분 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t1의 비율만큼 공제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290,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9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5.03.24. (주)△△건설 ■■■■와 계약한 ☆☆리 (♠♠마)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덤프트럭 적재시간(t1) 10분 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t1의 비율만큼 공제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20,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2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 및 관리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환경관리과-3457(2015.02.02)호에 관외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인원과 관계없이 전입신고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0리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외 주민등록 전입자인 ○○○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미지급하였음.

▶ 미지급 세대 종량제 봉투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15년 8월 농약빈병수거함을 제작 보급하여 매년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14개리 34개소에 설치된 농약 빈병 수거함 중 4개소를 표본 점검(●●· □□1· ☆☆2· ▲▲리) 결과 1개소를 제외한 3개소에 농약 빈병 외 일반쓰레기들이 다량 투입되어 있고, 1개소는 뚜껑이 없는 등 농약 빈병 수거함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농약빈병 수거함 34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 후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매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실시하고,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 하고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라고 되어있음에도 2014년도 2회 통보된 박○○ 외 14가구, 2015년 2회 2가구에 대하여 6개월 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박○○ 외 9가구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정●● 외 6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통보는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최소 1개월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기한내 미이행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 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1길 주문자에 대하여 장애인 재판정 안내문 발송 후 기한 내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 않은 자에게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0,000원(2016년 2~3월분)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에 소홀히 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활동적이며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39149(2014.06.18.)호 및 주민복지과-3902(2016.01.18.)호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은 년 4회 이상 경로당 점검(안전) 및 경로당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였으나, 실제 분기별로 점검했다고는 하나 2014년 1/4분기 외 3차례에 한하여 경로당 점검계획만 있을 뿐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가 없는 등 경로당 점검(안전) 및 지도 관리에 소홀히 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개포면에서는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세대주 및 이장확인 담당자 확인을 누락하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과기 등)에 따라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 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김□□ 외 6명에 대한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음.

- ▶ 미회수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변경, 생년월일의 변경, 용모 변경 등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하면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음에도, 양□□ 외 12명에 대하여 수수료 미 징수 및 미소인한 사실이 있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1,000㎡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 취득자가 신청 당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6건에 대하여 구비서류가 아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과다 징구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농지법 제49조제3항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길 111 이○○ 외 64건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를 소홀히 함.
 - ▶ 농지원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65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학자금 신청접수시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야 하나, 2014~2015년 농업인 학자금신청 접수시 3건에 대하여 관련 구비서류(건강보험증사본)를 미 첨부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